

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6.

발 의 자 : 김선민 · 강경숙 · 차규근
송기현 · 김준형 · 정춘생
서왕진 · 신장식 · 김재원
이해민 · 황운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.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원폭피해자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으로, 의료지원 외에도 생활 및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 이에 더하여 사후에는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또한,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자녀에 대한 제도적 보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. 그런데 국가인원위원회의 「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」에 따르면, 원폭피해자의 자녀는 일반 인구집단에 비하여 골수암, 갑상선질환 등 일부 질환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상 취약성이 확인되고 있음.

이에 국가가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생활 및 돌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피해자 사후에는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, 원폭피해자의 자녀에 대하여도 의료지원, 장례비지원 및 복지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 2, 제14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등).

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의료”를 “피해자 등의 의료·장례·복지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본문 중 “말한다”를 “말한다. 이하 같다”로 한다.

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장례비지원)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.

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는 제1항에 따른 장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액 및 지급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14조의3(복지지원사업)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주거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
2. 건강관리 지원 사업
3. 피해자 단체의 운영지원
4. 그 밖에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

② 국가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복지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피해자의 친생자에 대한 지원) ① 국가는 피해자의 친생자에게 제12조,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절차 및 비용 부담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례비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2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생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<u>의료</u>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12조(의료지원) ① (생 략)</p> <p>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(일본의 「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 받은 사람을 말한다)는 이 조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제13조제2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피해자 등의 의료·장례·복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2조(의료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u>말한다. 이하 같다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4조의2(장례비지원) ① 국가는</u></p>

<신 설>

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.

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는 제1항에 따른 장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액 및 지급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14조의3(복지지원사업)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주거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
2. 건강관리 지원 사업
3. 피해자 단체의 운영지원
4. 그 밖에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

② 국가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복지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<신 설>

제17조의2(피해자의 친생자에 대한 지원) ① 국가는 피해자의 친생자에게 제12조,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절차 및 비용 부담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